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3. 7. . (제 회)	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재무과)
제출연월일	2013. 7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3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13. 7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의결 주문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 이유

고령군 군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·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재산세 과세 특례 용어 개정 (안 제15조)

- 재산세 과세특례 → 재산세 도시지역분

나.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조정(안 제16조)

- 5만원 이하 → 10만원 이하

4. 내 용 : 붙임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발취 : 지방세법 제111조, 제112조, 제115조

나. 예산 관련 사항 : 해당 없음

다. 입법 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가목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과세특례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)”으로 하고 본문 중 “과세특례”를 “도시지역분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5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조례에 따라 부과·징수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세율)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p>1. ~ 3.(생략)</p> <p>4. 선박 가. 법 제1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</p>	<p>제12조(세율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선박 가.-----제5항-----</p>
<p>제14조(과세특례 대상 지역의 고시)</p> <p>① (생략)</p>	<p>제14조(재산세 도시지역분-----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과세특례)</p> <p>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</p>	<p>제15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</p> <p>-----도시지역분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6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.</p>	<p>제16조(납기) -----</p> <p>-----10만원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

<관련 법률>

지 방 세 법

제111조(세율)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

4. 선박

가.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
나. 그 밖의 선박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3

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"이라 한다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제115조(납기)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 :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
2. 건축물 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
3. 주택 : 해당 연도에 부과·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. 다만, 해당 연도에 **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**